

#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5138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2.

제안자 :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### 가. 심사경과

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	심사경과
2207453	조지연의원	2025. 1. 13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제427회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회의(2025.7.1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</li><li>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11.18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</li></ul>
2212626	강대식의원	2025. 9. 3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6차 전체회의(2025.11.14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</li><li>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11.18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</li></ul>

나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11. 18.)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.

다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(2025. 11. 2

4.)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  
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 
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 이상 29세  
이하로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「청년기본법」에서는 청년을 19세 이  
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 
법」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  
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. 아  
울러,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약 1  
년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.

이에 「근로기준법」 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  
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, 상한 연령은 타  
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).

##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”을 “15세 이상 34세 이하인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</u> 사람을 말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15세 이상 34세 이하인</u> ----- ----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</p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